

학생상담센터 규정

제1조 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본 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하며,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센터는 본 대학교 학생들의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와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업무 및 분담) 전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상담분야
 - 가. 심리검사 및 해석
 - 나.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
 - 다. 집단상담
2. 연구분야
 - 가. 학생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
 - 나. 심리, 상담에 관한 조사연구
3. 교육분야
 - 가. 실습생 교육
 - 나. 이성교제 세미나
 - 다. 상담원 재교육
 - 라. 정신건강 심포지움
4. 교내 기관 업무협조분야
 - 가. 교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세미나 개최
 - 나.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
 - 다. 기타 교내 상담관련 프로그램 지원

제4조 (구성) 본 센터에는 소장 1명, 카운슬러(석사이상 연구원) 및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본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은 본 대학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 임무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운영 계획
2. 학생 상담과 지도의 계획
3. 센터 운영상의 중요사항.

제7조 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연구비, 외부연구비 및 기타 기탁금 등으로 충당한다.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8조 (센터의 지원 및 관리) 센터의 지원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 (센터의 폐지) 본 센터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

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.

제10조 (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 (세칙설정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세칙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또는 폐기 할 수 있으며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(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).